사천시 고시 제2016-164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**제1항 및**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. 8. 1.

사 천 시



1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
 - 일몰 30분 후 ~ 일출 30분 전(기상청 발표기준)
- 나.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 설치 낚시어선 : 22:00 ~ 익일 03:00
 - ※ 단,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(선외기 설치어선 포함)의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- 2. 소형낚시 어선의 기준: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

3. 영업구역의 제한

- 가.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나. 사천시 향촌동 남일대 코끼리바위 해안소초 주변 300m 이내의 해역에서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(기상청 발표기준)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다. 간출암에서의 영업은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이 곁에서 대기 중일 때에 한하며, 사유도서는 소유자가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제한구역으로 한다.
- 라. 3톤 미만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소형낚시어선은 사천시 모든 항·포구로부터 3마일 이내의 해역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.

4.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 안전운항 조치

- 가.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: 출항금지
- 나. 안전운항 위험 상존 시 : 출항제한

5.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

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(목재류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 상판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6.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가. 공통사항

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(승객, 낚시어선업자, 선원 등)은 반드시 구명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
나. 승객 준수사항

- (1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, 이하 같다)로 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.
- (2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(3)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,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가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(나)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- (다)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(라)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(마)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(바)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무단 취사, 야생 동식물을 반출 하는 등의 행위
- (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(6)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·채취금지 체장(체중)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(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,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.
- (8)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(9)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다.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- (1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(2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.

- (3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 시 낚시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낚시 객과 상호연락 체계 유지를 위해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 (기록)하여야 하며, 통신이 불가능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나) 출입항 신고 시 지점별 하선 인원을 신고하여 낚시 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.
- (4)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5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소방서 등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방지를 위해 폐기물수거통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(나)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 식 간이변기를 1식 이상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 ※단,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분뇨를 저장 또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(분뇨오염방지설비)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한다.
- (7)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승선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- (8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9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3-166호는 폐지한다.
-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5-112호는 폐지한다.
- ④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6-119호는 폐지한다